

「평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04월 28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 2020년 05월 07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5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0년 05월 0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를 삭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의 근거를 삭제(안 제3조, 제16조)
-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참여행사 운영기준 명시(안 제4조)
- 홈페이지 게시자료 삭제 이유 통지 규정 삭제 및 게시자료 삭제 사유 정비(안 제6조)
- 전자우편 서비스 제공 관련 조항 삭제(제14조,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최순철)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를 삭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에 취지가 있으며

○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인터넷시스템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에 관해 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민간위탁의 근거를 삭제

안 제4조에서는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참여행사 규정 신설

안 제6조에서는 더 이상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므로 인한

게시자료 삭제 시 이유 통지의무인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4조, 제15조에서는 공무원에게는 행정망에서 공직자 통합메일만 사용이 가능한 점, 이용자 또한 I·D보급이 보편화됨에 따라 실용성이 없다 할 수 있는 **전자우편 서비스 제공조항을 삭제**

안 제16조에서는 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을 의무에서 재량사항으로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은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평창군”을 “평창군이”로, “질높”을 “질 높”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위해”를 “위해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구축”을 “군이 구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이라 함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민원사무”를 “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의 규정에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자료관리담당자”를 “자료관리 담당자”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자치단체가”를 “군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알권리”를 “알 권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인터넷 시스템 운영주관 부서의 장(이하 시스템운영부서의장이라 한다.)은 인터넷 시스템”을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으로, “수립하여야 한다”를 “세워야 한다”로 한다.

③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 부서(이하 “시스템 운영부서”라 한다), 개별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는 부서(이하 “홈페이지 관리부서”라 한다), 홈페이지 내 분야별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이하 “분야별 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인터넷시스템 개선)”을 “(홈페이지 개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군수는 홈페이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참여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여자에게 보상으로 상품권 등을 제공 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상품권 등의 종류, 액수, 및 그 밖에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홈페이지관리부서의 장(이하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을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을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으로, “정보제공시”를 “정보 제공 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관리부서”를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 및 분야별 담당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관리부서”를 “홈페이지 관리부서”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근거없”을 “근거 없”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아닌것 으”를 “아닌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기타 연습성”을 “연습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와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또는 주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10. 성차별적 표현·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있는 경우

11. 그 밖에 공익을 해치거나 게시판 운영 내용에 맞지 않게 게시하는 경우 제7조 본문 중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를 “민원담당부서에서 관리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종합민원과장은 자치단체장이 처리할 수 있”을 “군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를 “군수는 인터넷”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자민원 창구의 인터넷”을 “전자민원창구의”로, “계재된 처리비용을 군수가 관리하는”을 “처리비용을 군수가 지정한”으로, “입금”을 “입금한 것”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민원신청시”를 “민원 신청 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민원 처리기관에”를 “군수에게”로,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를 “즉시 변경해 주어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를 “열린 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로, “하기 위해 자치단체장과”를 “위해 군수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장(제14조부터 제1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6조의 제목“(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을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치단체를”을 “군을”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운영”을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구성하여야 한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를 “지정·관리”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시스템운영부서”를 “시스템 운영부서”로, “강구해야”를 “마련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스템운영부서”를 “시스템 운영부서”로, “사고발생시”를 “사고발생 시”로 한다.

제19조 중 “의한”을 “의한 분야별”로,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을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평창군</u> 인터넷 이용자에게 <u>질높은</u>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평창군이</u> ----- <u>질 높</u>-----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삭 제</u></p> <p>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p> <p>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u>구축한</u>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p> <p>4.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민원사무 중 <u>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u>을 말한다.</p> <p>5.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u>규</u></p>	<p>제2조(정의) ----- -----.</p> <p>2. -----<u>이란</u> ----- ----- <u>위해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u>이 ----- -----.</p> <p>3. -----<u>란</u> ----- ----- <u>군이 구축</u>----- -----.</p> <p>4. -----<u>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사무</u>----- -----.</p> <p>5. -----<u>란</u> ----- -----<u>에 따른</u></p>

정에의한 정보를 말한다.

- 6.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 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 ① (생략)
-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 1.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 2. ~ 4. (생략)
 - 5. 전자우편 ID 이용
 - 6. (생략)
 - 7.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 홈페이지관리부서,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

정보를 말한다.

- 6. -----란 -----
----- 자료관리 담당자 -----

-----.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 ① (현행과 같음)
- ② -----
-----.
- 1. 군이 -----

- 2. ~ 4. (현행과 같음)
- <삭 제>
- 6. (현행과 같음)
- 7. 그 밖의 -----
-- 알 권리 -----

-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이하 “시스템 운영부서”라 한다), 개별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는 부서(이하 “홈페이지 관리부서”라 한다),

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④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 시스템 운영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운영부서의장이라 한다.)은 인터넷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홈페이지 내 분야별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이하 “분야별 담당 부서”라 한다)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④-----

---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

--- 세워야 한다.

제4조(홈페이지 개선) ① 군수는 홈페이지-----

-----.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참여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여자에게 보상으로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상품권 등의 종류, 액수, 및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홈페이지관리부서의 장(이하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그 밖에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

-----.

②분야별 담당부서의 장-----

----- 정보 제공 시 -----

-----.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 및 분야별 담당부서-----

-----.

②홈페이지 관리부서-----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1.·2. (생략)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 6. (생략)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신설>

<신설>

----- 각 호의 어느 하나-----

----. <후단 삭제>

- 1.·2. (현행과 같음)
3. ----- 근거
없-----
4. ~ 6. (현행과 같음)
7. -----

----- 아닌 것으-----

8.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또는 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연습성-----

10. 성차별적 표현·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있는 경우

11. 그 밖에 공익을 해치거나 계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군수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 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③종합민원과장은 자치단체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

시판 운영 내용에 맞지 않게 게시하는 경우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단서 삭제>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 「전자정부법」 제9조-----

-----.

②-----

----- 민원담당부서에서 관리한다.

③군수-----

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 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군수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0조(민원처리 공개) ① (생략)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

--.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군수는 인터넷 -----

-----.

② 전자민원창구의 -----

-- 처리비용을 군수가 지정한 -----
----- 입금한 것 -----
-----.

제10조(민원처리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 대해서 -----

-----.

③ -----

----- 사람 -----

--- 민원 신청 시 -----

청할 수 있다.

④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① 군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자치단체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군수는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

④-----

-- 군수에게 -----

----- 즉시 변경해 주어야 -----.

제12조(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① -----
----- 열린 행정 구현과 이
이용자와의 ----- 위해 군수
와-----
-----.

②-----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삭 제>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①군수는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②군수는 전자우편 ID보급·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 받은 주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제16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군수는 국외에 자치단체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

<삭 제>

제16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군을

----- 운영-----

----- 구성할 수 있다.

③-----

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18조(시스템 안전대책) 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번호관리) 제5조제2항에 의한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지정·관리-----

-----.

제18조(시스템 안전대책) ① 시스템 운영부서-----

--- 마련하여야 -----
-----.

② 시스템 운영부서-----

--- 사고발생 시 -----
-----.

제19조(비밀번호관리) -----
--- 의한 분야별 -----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